

관리번호		-						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							
① 신고인 (양도인)		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대표자성명									
		대표자 생년월일		사업연도		전화번호									
		소재지				전자우편주소									
② 양수인		성명(상호)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양도자산소재지		지분		양도인과의 관계					
③ 서울구분		코드		합계		국내분 소계		-		-		-		국외분 소계	
④ 양도소득금액															
⑤ 기신고·결정·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															
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															
⑦ 양도소득기본공제															
⑧ 과세표준 (④+⑤-⑥-⑦)															
⑨ 세율															
⑩ 산출세액															
⑪ 감면세액															
⑫ 외국납부세액공제															
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															
⑭ 원천징수세액공제															
⑮ 가산세		신고불성실		(대상금액, 세율)		(대상금액, 세율)		(대상금액, 세율)		(대상금액, 세율)		(대상금액, 세율)		(대상금액, 세율)	
		납부지연		(대상금액, 일수)		(대상금액, 일수)		(대상금액, 일수)		(대상금액, 일수)		(대상금액, 일수)		(대상금액, 일수)	
		기장불성실 등		(대상금액, 세율)		(대상금액, 세율)		(대상금액, 세율)		(대상금액, 세율)		(대상금액, 세율)		(대상금액, 세율)	
		계													
⑯ 기신고·결정·경정세액															
⑰ 자진납부할세액 (⑩-⑪-⑫-⑬-⑭+⑮-⑯)															
⑱ 분납(물납)할세액															
⑲ 자진납부세액															
⑳ 환급세액															
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								신고인은 「법인세법」 제62조의2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,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에 따라 위 내용을 (예정·수정)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세무대리인 (성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							
㉑ 법인세감면세액															
㉒ 세율															
㉓ 산출세액															
㉔ 수정신고가산세 등		(대상금액, 일수)													
㉕ 기신고·결정·경정세액															
㉖ 자진납부할세액															
㉗ 분납할세액															
㉘ 자진납부세액															
㉙ 환급세액															
				㉚ 금융기관명											
				㉛ 계좌번호											
첨부서류		1.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또는 부표2) 1부 2. 매매계약서 1부 3.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. 감면신청서 1부 5.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												접수일자 인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	1.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.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													

작성 방법

1.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.
2.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(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제1호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) 외의 이자, 배당, 주식,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·건물 및 주식(출자지분 포함)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.
3.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·건물 및 주식(출자지분 포함)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4. ①신고인(양도인)란 :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,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5. ③세율구분란: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,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(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 2)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(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6.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: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「소득세법」 제90조제2항(소득금액 차감방식)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7. ⑦양도소득기본공제란: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,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(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).
8. ⑩산출세액·⑪감면세액·⑫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: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.
※ ⑪감면세액란은 「소득세법」 제90조제1항(세액감면방식)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.
9.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: (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)+(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× 공제율)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0. 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: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.
11. ⑮가산세란: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·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(무신고 10~20%, 과소신고 10%, 부당과소 40%)·납부지연가산세(1일 2.2/10,000를 적용하되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를 적용한다)·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2. ⑯기신고·결정·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(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), 무신고결정·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(누계금액을 말합니다)을 적습니다.
13. ⑰자진납부할세액란부터 ⑳환급세액란까지: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.
14. 환급금 계좌신고(㉕·㉖)란: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 다만, 환급세액이 5,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계좌개설(변경)신고서(별지 제22호서식)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15. 과세대상자산은 「법인세법」 제6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을 「소득세법」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관리번호

-

※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.

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
□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

① 세 율 구 분 (코 드)			합 계	(-)		(-)		(-)	
② 소 재 지									
③ 자 산 종 류 (코 드)				()		()		()	
거래일자 (거래원인)	④ 양도일자(원인)			()		()		()	
	⑤ 취득일자(원인)			()		()		()	
거래자산 면적(㎡)	⑥ 총 면 적 (양도지분)	토 지		(/)		(/)		(/)	
		건 물		(/)		(/)		(/)	
	⑦ 양도면적	토 지							
		건 물							
	⑧ 취득면적	토 지							
		건 물							

□ 양도소득금액 계산

거래금액	⑨ 양 도 가 액																		
	⑩ 취 득 가 액																		
	취 득 가 액 종 류																		
⑪ 기 납 부	토 지 초 과 이 득 세																		
⑫ 기 타	필 요 경 비																		
양도차익	전 체 양 도 차 익																		
	비 과 세 양 도 차 익																		
	⑬ 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																		
⑭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																			
⑮ 양 도 소 득 금 액																			
감 면 소 득	⑯ 세 액 감 면 대 상																		
금 액	⑰ 소 득 금 액 감 면 대 상																		
⑱ 감 면 종 류	감 면 율																		

□ 기준시가 (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)

양도시		일 반 건 물																	
기준	⑲ 건물	오피스텔·상업용																	
		개별·공동주택																	
시가	⑳ 토 지																		
	합 계																		
취득시		일 반 건 물																	
기준	㉑ 건물	오피스텔·상업용																	
		개별·공동주택																	
시가	㉒ 토 지																		
	합 계																		

작성 방법

1. ①세울구분란: 다음의 세울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울구분코드를 적습니다.

소재지 구분	소재지		세 울 구 분	토지·건물												부동산에 관한권리			기타 자산 (주식 외)	비사업용 토지과다 보유법인 주식		
	국 내	국 외		2 년 이 상	1년 이상 2년 미만	1년 미만	1세대 2주택 (부수토지 포함)	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 유한 경우 1주택	1세대3 주택 이상의 주택 (부수토지 포함)		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0이상인 경우주택		비사업용 토지		미 등 기	지 정 지 역1 0% 가 산	2 년 이 상	1년 이상 2년 미만		1 년 미 만	A	B
									A	B	A	B	A	B								
코드	1	2	코드	10	15	20	10	10	25	10	28	10	26	10	30	11	10	15	20	10	27	10

※ A: '09.1.1.~'09.3.15. 취득 및 양도분, B: '09.3.16~'13.12.31 양도분

2. ③자산종류란: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.

자산 종류	토지·건물				부동산에 관한 권리				기타자산			
	토지	고가 주택	일반 주택	기타 건물	지상권	전세권	등기된 부동산 임차권	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	특정 주식	영업권	사실물 이용권	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
코드	1	2	3	4	5	6	7	8	14	15	16	17

3. 거래원인: 매매, 수용, 협의매수, 교환, 공매, 경매, 상속, 증여, 인척, 분양, 기타 등을 적습니다.
4. ⑥총면적란: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,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.
5. ⑦양도면적란: ⑥총면적 ×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.
6. ⑩취득가액란: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.[상속·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아래의 나, 다에 따른 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]
- 가.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: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
- 나.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: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
- 다.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: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용
- 라.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: 양도가액(⑨) × [취득시기기준시가(⑩+⑪)/양도시기기준시가(⑬+⑭)]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
- ※ 취득가액 종류란: 실지거래가액,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, 환산취득가액,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용
7.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란: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.
8. ⑫기타 필요경비란: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적고,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·감정가액·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.
9.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: 토지·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
1세대1주택	21.1.1.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시 12%부터 매년 4%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%한도로 공제하고, 3년 이상 거주 시 12%(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%)부터 매년 4%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%한도로 공제 (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표2)
1세대1주택외	20.12.31.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시 24%부터 매년 8%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%한도로 공제 19.1.1.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시 6%부터 매년 2%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%한도로 공제 (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표1) 18.12.31.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시 10%, 4년 이상 보유 시 12%부터 매년 3%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%한도로 공제

10. ⑮세액감면대상란: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「소득세법」 제90조제1항(세액감면방식)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 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- ⑰소득금액감면대상란: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「소득세법」 제90조제2항(소득금액 차감방식)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11. ⑱감면종류 및 감면율란: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(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).
12. ⑲건물란: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.
- 가. 일반건물: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(건물 m²당 가액)에 건물면적(전용+공용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- 나. 상업용·오피스텔: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(토지+건물)에 건물면적(전용+공용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- 다. 개별·공동주택: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(토지+건물)
13. ⑳토지란: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4. ㉑건물란: ⑲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(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).
15. ㉒토지란: 취득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(취득일이 '90.8.29. 이전인 경우에는 '90.1.1.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).

관리번호	-
------	---

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
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

① 주 식 종 목 명	합계						
②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				
③ 주 식 종 류 코 드							
④ 취 득 유 형							
⑤ 취 득 유 형 별 수 양 도 주 식 수							

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

⑥ 양 도 일 자							
⑦ 주 당 양 도 가 액							
⑧ 양도가액 (⑤ × ⑦)							
⑨ 취 득 일 자							
⑩ 주 당 취 득 가 액							
⑪ 취 득 가 액 (⑤ × ⑩)							
⑫ 필 요 경 비							
⑬ 양 도 소 득 금 액 (⑧ - ⑪ - ⑫)							
⑭ 감 면 소 득 금 액							
⑮ 감면종류	감 면 율						

작성 방법

- ①주식종목명란: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②주식종목코드란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,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※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.
- ③주식종류코드란: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.

주 식 등 종류	비상장주식						상장주식			기타 자산 (주식등 양도분)	국외 주식	
	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			기타비상장법인			주권상장법인				중소 기업	기 타
	중소 기업	기 타	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	중소 기업	기 타	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	중소 기업	기타 대주주	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			
세율	10%	20%	30%	10%	20%	30%	10%	20%	30%	누진	10%	20%
코드	11	12	13	31	32	33	43	42	41	51	62	61

- ④취득유형란: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.

취득 유형	매매	공모	유상 증자	무상 증자	주식 배당	합병	증여	상속	출자	기타
코드	1	2	3	4	5	6	7	8	10	9

-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: 양도주식수를 적되,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.
- ⑦주당양도가액란: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.
- ⑧양도가액란: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(⑤×⑦)을 적습니다.
- ⑩주당취득가액란: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(상속·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)을 적습니다.
※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,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·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.
- ⑫필요경비란: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·증권거래세·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,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⑭감면소득금액란: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-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: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(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).